

相談：鄭 基 善 (서울대학교病院 附設
 病院 研究所 諮問研究
 委員)·公認會計士
 柳 泰 鉉 (公認會計士·正宇會計
 法人)

國民의 福祉向上과 더불어 점차 增大되는 醫療需要는 醫療保險制度의 擴大實施와 함께 國民에 對한 醫療施惠를 점차 充足시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急増하는 醫療需要와 함께 醫療에 對한 選好度에 비해 醫療機關의 發展은 現實情을 勘案한 醫療制度上의 各種問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에 처해 있다.

本會는 이에 특히 病院諸稅面에 關心을 갖고 病院稅制欄을 마련하여 病院運營 發展에 一助가 되고자 하니 회원병원의 많은 參與를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区分經理를 하여야하나 非營利法人인 醫療法人이 收益事業인 병원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收益事業에서 생긴 所得으로 보지 않는 收益은 稅務調整時 損金算入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그러면 非收益事業을 영위하는 경우는 어떻게 区分經理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法人稅法令 제 2조 제 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貸借對照表 項目인 자산과 부채는 일종의 本支社計定을 사용하여 区分經理를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처리는 學校法人의 경우 아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學校法人 산하의 學校의 長은 주요 자산항목(예, 土地의 취득, 학교건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는 契約權도 없으며 은행으로부터 借入을 할 수도 없도록 되어있어 오직 學生의 教育등에만 專念하도록 되어있는 반면에, 學校法人의 理事長은 契約·借入등 財産의 運用에 관한 모든 주요 權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學校의 財産은 모두 法人의 所有이나 學生의 教育·研究등을 위하여 學校에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學校에 教育·研究施設을 모두빌려주고 나면 法人의 帳簿上 남아있는 資産으로는 預金이나 有價證券 및 備品등의 一部項目을 볼 수 있으며 가장 큰 항목은 學校計定(支社計定)인 것입니다.

學校法人의 會計를 援用한다면 醫療法人도 유사한 방법으로 区分經理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醫療法人의 대차대조표가 아래와 같다면 이는 다음과 같이 区分될 수 있습니다.

[問] (1) 醫療法人의 預金등으로 부터의 收入利子는 法人稅 課稅所得의 계산시 非課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区分經理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醫療法人의 收益事業체인 病院이 그 所得의 一部 또는 全部를 醫療法人의 高유목적사업을 위하여 非收益事業에 기부(轉出)하고 그 資金을 가지고 病院의 擴張을 위한 土地를 매입하는 경우 容認되는지요? (부산 1病院)

[答] (1) 위의 두가지 질문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收入利子등의 非課稅與否에 관하여는 1984年 8·9月号와 11月号의 稅務相談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非課稅됩니다. 醫療法人이 收益事業과 非收益事業을 영위하는 경우의 区分經理與否에 관한다는 法人稅法 施行令 제 2조 제 4항에서 “非營利內國法人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資産·負債 및 損益을 당해 收益事業 또는 收入의 源泉에 속하는 것과 收益事業이 아닌 其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會計로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全体貸借対照表

(단위 : 百万원)

資 産		負債 및 基本財産	
예 금	1,200	유동부채	920
유가증권	10	고정부채	2,900
기타유동자산	1,200	기본재산	1,960
고정자산	4,320		
이연자산	200		
계	5,780	계	5,780

医療法人貸借対照表

(단위 : 百万원)

資 産		基 本 財 産	
예 금	50	기본재산	1,960
유가증권	10		
비품등	2		
병원계정	1,898		
계	1,960	계	1,960

病院貸借対照表

(單位 : 百万원)

資 産		負 債	
기타유동자산	1,200	유동부채	920
고정자산	4,318	고정부채	2,900
이연자산	200	법인계정	1,898
계	5,718	계	5,718

위와 같은 区分經理下에서는 法人에 속해있는預金이나 有價證券으로 부터의 利子등이 非課稅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病院에서 法人의 高목적 사업인 慈善診療나 宣教 또는 医学研究등을 위하여 1년에 2억원의 寄附金を 法人에 轉出하고 法人稅法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중 淸호안의 但書規定에 의거 2억원의 60%인 120百万원은 기부금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80百万원은 稅務調整時 益金算入하며, 法人은 2억원을 가지고 土地를 구입하였다면 이의 容認與否는 약간 疑問視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法人이 区分經理를 하고 있고, 法人의 定款에 정해진 固有目的事業을 위하여 기부받은 資金이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금액이 1984年 4月号 稅務相談時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末日부터 1年以内に 80% 이상을 사용한 것을 경우에는 形式的인 面에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稅務調査時 “주머니 돈이 째지 돈인데 인정할 수 없다”는 主張이나 올 수 있는 余地는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区分經理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慣行으로 만들기 위한 病院界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5) 참고로 預金利子收入에 대한 課稅與否에 관한 例規通牒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質疑 : 法人稅法 第 1條 第 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 内国法人이 同法 同條 同項 第 1號 및 第 2號에 規定한 收益事業과 관련된 銀行預金(普通預金·定期預金·定期積金 등)의 利子收入에 대한 法人稅 課稅問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兩說이 있음.

〈甲說〉 法人稅가 課稅된다.

(理由) 非營利 内国法人의 銀行利子收入도 收益事業과 관련된 預金에 따른 利子收入이라면 이는 收益事業의 附隨收益概念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乙說〉 法人稅가 課稅되지 아니한다.

(理由) 非營利 内国法人에 대하여는 個別的으로 列擧된 收益事業 또는 收入에서 생긴 所得에 대하여만 法人稅가 賦課되도록 規定하고 있는 바, 非營利 内国法人의 銀行預金 利子收入에 대하여는 個別的으로 收益事業 또는 收益의 범위에서 列擧 規定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非營利 内国法人의 경우 固有目的事業과 收益事業間의 資金관계도 任意로 轉出入 시킴으로써 調整처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非營利 内国法人의 銀行預金 利子收入은 收益事業의 附隨收益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回答 [法人 1264 21-2160, 1981 6. 18]

非營利 内国法人에 대하여는 그 法人의 定款 또는 規則上의 事業目的에 불구하고 法人稅法 第 1條 第 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同條 各號에 제기하는 收益事業 또는 收入에서 생긴 所得에 한하여 法人稅를 賦課하는 것이며, 이 경우 收益事業 또는 收入에서 생긴 所得에는 預金·積金 등의 利子和 割引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담당 : 鄭基善)